

[별첨 2 : 심의항목별 운영가이드]

	운영 가이드	비고 (근거)																	
협력사 등록 심 의	- 선정일로부터 15日 이내 결과를 선정 업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개별 통지한다.	공정위, 4大 실천사 항 - 협력업체 선정 (등록) 실천 사항																	
	- 탈락 업체에게는 15日 以上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再심의後 결과 통보																		
협력사 등록 취 소	- 등록 취소된 업체에는 사유를 기재 통보하고,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以上 기간內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의신청업체에 再심의後 결과 통보																		
가 격 결 정 심 의	- 구매단가 결정時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		하도급法 제4조 等 -부당한 하도급 대 금의 결정 금지																
	<table><tr><th>의무 사항</th><th>금지 사항</th></tr><tr><td>1. 합리적, 현실적 기준 반영</td><td>1.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인하</td></tr><tr><td>2. 반드시 단가 합의서 첨부</td><td>2. 협력사에 인하 목표 일방적 할당</td></tr><tr><td>3. 사양 변경, 설계 변경분 반영</td><td>3. 내부 경영목표 미달 사유로 인하</td></tr><tr><td>4. 공급원가변동분 단가 반영</td><td>4. 단가인하時 既발주분 소급적용</td></tr><tr><td>5. 운송조건변경時 물류비 반영 等</td><td>5. 당사에 유리한 환율, 결제 화폐 적 용</td></tr><tr><td></td><td>6. 객관적 근거 없는 인하 (협력사 영업이익 기준 等)</td></tr><tr><td></td><td>7. 물량 약속 빚미 또는 非거래 업체의 비정상 견적 이용 인하 等</td></tr></table>			의무 사항	금지 사항	1. 합리적, 현실적 기준 반영	1.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인하	2. 반드시 단가 합의서 첨부	2. 협력사에 인하 목표 일방적 할당	3. 사양 변경, 설계 변경분 반영	3. 내부 경영목표 미달 사유로 인하	4. 공급원가변동분 단가 반영	4. 단가인하時 既발주분 소급적용	5. 운송조건변경時 물류비 반영 等	5. 당사에 유리한 환율, 결제 화폐 적 용		6. 객관적 근거 없는 인하 (협력사 영업이익 기준 等)		7. 물량 약속 빚미 또는 非거래 업체의 비정상 견적 이용 인하 等
	의무 사항	금지 사항																	
	1. 합리적, 현실적 기준 반영	1.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인하																	
	2. 반드시 단가 합의서 첨부	2. 협력사에 인하 목표 일방적 할당																	
	3. 사양 변경, 설계 변경분 반영	3. 내부 경영목표 미달 사유로 인하																	
	4. 공급원가변동분 단가 반영	4. 단가인하時 既발주분 소급적용																	
	5. 운송조건변경時 물류비 반영 等	5. 당사에 유리한 환율, 결제 화폐 적 용																	
		6. 객관적 근거 없는 인하 (협력사 영업이익 기준 等)																	
	7. 물량 약속 빚미 또는 非거래 업체의 비정상 견적 이용 인하 等																		
기 타 사 항	- 부당한 특약 조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하도급法 제3조의4, 제12조의3, 제18조 等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특정업체 물품 등을 사용 지정 불가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기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